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1. 3. 3.

운영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발의일자: 2021년 2월 17일
- 나. 발 의 자: 이규선 의원 외 7명
- 다. 회부일자: 2021년 2월 24일
- 라. 상정일자: 제2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(2021. 3. 2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이규선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의원연구단체의 활성화를 통하여 전문적인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의원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(안 제1조~제2조)
- 연구단체의 구성,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3조~제4조)

-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,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
(안 제5조~제7조)
-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8조)
- 연구활동비, 의원정책개발비 집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
- 연구단체의 활동계획변경,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등에 대하여 규정함
(안 제10조~제12조)
- 연구단체의 등록취소 및 존속기한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13조~제14조)
- 의회규칙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(안 제1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-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10월부터 시행 중이던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전부를 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총 15개의 조문과 부칙, 별지 6개 서식으로 구성됨.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2조(정의)를 신설하여 “의원연구단체, 연구활동비, 의원정책개발비”에 대한 정의를 각각 규정하고,
 - 안 제3조(연구단체의 구성)는 기존 조례와 동일하게 연구 단체의 구성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5명 이상으로 하고, 연구단체의 대표자와 간사의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음.
 - 안 제4조는 연구단체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조례 내용에 더하여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도록 절차를 규정하였음.
 -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에 관한 규정으로 기존 조례의 위원회의 위원이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고 위원회의 동의를 받게 한 조항을 삭제하였음.
 - 안 제8조와 제9조는 연구단체 지원과 연구활동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,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동경비의 “5퍼센트 범위”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

음을 “10퍼센트 범위”로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단서조항으로 “각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는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원”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이를 살펴보면, 2021년도 의회 소관 세출예산에 “의정운영공통경비”로 1억1,814만원이 편성되었고 이의 10퍼센트이면 약 1,181만원이 해당됨. 지원액을 높인 것은 연구단체의 수가 늘어날 경우 단체별로 충분하지 못하게 예산이 배분될 수 있기에, 총액을 확대하여 의원이 다양한 정책 연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보임. 다만, 각 연구단체당 300만원의 한도를 둠으로써 기존의 5퍼센트인 590만원 내에서 2개의 연구단체 지원액에 상당하도록 하였음.

- 안 제10조는 연구활동계획의 변경에 관한 규정으로 제2항을 신설하여 연구단체가 변경신청을 제출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를 연구단체에 통보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였음.
- 안 제12조(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)의 개정은 연구활동기간을 매년 11월 말까지로 하고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5월 말까지로 하고, 결과보고서를 11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음. 이는 안 제14조의 연구단체 존속기한을 등록일로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하고,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는 임기만료일까지로 한 것과 상통하는 것으로, 결과보고서 제출에서 위원회 심의 후 결과 통보까지 연도 내에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.

○ 검토 결과

-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, 기존의 의원연구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 등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(이규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제 304 호
----------	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1년 2월 일

발의자 : 이규선 의원 외 7명

1. 제안이유

의원연구단체의 활성화를 통하여 전문적인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의원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연구단체의 구성,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3조~제4조)
- 다.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,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
(안 제5조~제7조)
- 라.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8조)
- 마. 연구활동비, 의원정책개발비 집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
- 바. 연구단체의 활동계획변경,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등에 대하여 규정함
(안 제10조~제12조)
- 사. 연구단체의 등록취소 및 존속기한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13조~제14조)
- 아. 의회규칙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(안 제15조)

3. 개정안 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38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집행
- 다.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(이하 “연구단체”라 한다)”란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활동과 의정 및 구정 전반,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·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.
2. “연구활동비”란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.
3. “의원정책개발비”란 연구단체에서 정책개발을 위해 발주하는 정책연구 용역비를 말한다.

제3조(연구단체의 구성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은 연구단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, 각 의원은 2개 단체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.

③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,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

중 호선으로 정하고, 간사는 대표자가 지명한다.

④ 대표자는 연구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, 간사는 대표자를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.

제4조(연구단체의 등록 등)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,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영등포구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5조(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)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운영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.

제6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7조(위원회의 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
2.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
3. 연구활동비 책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4. 연구활동 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

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고,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한다.

제8조(연구단체 지원 등)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 단, 각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는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.

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연구활동비의 집행 등)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 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하며, 연구단체 사업별로 지급한다.

②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계획서 외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.

③ 연구단체가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12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.

④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.

제10조(연구활동계획의 변경) 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의장은 제1항의 변경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1조(공동참여)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·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.

제12조(연구활동 보고서 등의 제출) ①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기간은

매년 11월 말까지로 한다. 다만,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5월 말까지로 한다.

② 연구단체 대표자는 11월 말까지 별지 제6호 서식과 연구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, 연구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.

제13조(등록취소)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
2.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3.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
4. 특별한 사유 없이 연구단체 활동을 중단한 경우
5.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

제14조(연구단체의 존속기한 및 저작권) ①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등록일로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는 등록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.

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저작권은 의회에 귀속된다.

제15조(운영세칙)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연구단체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

「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.

- 1. 단 체 명 :
- 2. 설립목적 :
- 3. 구성의원

소속 상임위원회	성 명	서 명	비 고

년 월 일

신 청 인 대 표 : (인)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귀하

[별지 제2호서식]

연구활동계획서

「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연구단체명			
제출자		대표자	의원(인)
연구내용	주제		
	목적		
연구활동기간		년 월 일 ~	년 월 일
연구방법 및 세부연구 계획			
연구활동비	총액	금 원 (₩)	
	산출내역	※ 세부내역 별첨 - 자료 수집비, 여비, 급식비, 회의비, 강사료, 전문자문경비 등 - 활동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연차별 작성	
기타			

년 월 일

신청인 대표 : (인)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귀하

[별지 제4호서식]

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

「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.

연구단체명		
연구주제 변경내용	당초	연구주제
		연구목적
	변경	연구주제
		연구목적
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		
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		(별첨 : 구체적으로 서술)
연구활동비	총 액	금 원
	산출내역	
특기사항		

년 월 일

신청인 대표 : (인)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귀하

[별지 제5호서식]

의원 연구단체 심의결과 통보서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.

연구단체명		
대표	의원	
연구주제		
심의결과	내용	
	결과	
기타		

년 월 일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(인)

의원 연구단체 대표 귀하

